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1-15호

「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25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우리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한복입기 권장과 한복입는 날 지정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, 제5조)
- 라. 한복착용자의 우대에 관한 규정(안 제6호)
- 마.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30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

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juntae0819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